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6.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옥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9. 16.)

## 2. 제정이유

- 가정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및 제2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 비용추계: 비대상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감내해야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가정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것으로,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 및 가사 스트레스의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확산,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등 가사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부합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